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343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발의자 : 곽규택 · 김미애 · 나경원
조배숙 · 김재섭 · 백종현
김은혜 · 주진우 · 유상범
박수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,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,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.

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(안 제31조제4항 등).

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수임 제한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④</u> • <u>⑤</u> (생 략)</p>	<p>제31조(수임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</u> <u>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⑤</u> •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</p>